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107 발의연월일 : 2025. 4. 25.

발 의 자: 강득구·이학영·송재봉

전재수 · 채현일 · 민병덕

김태선 • 권칠승 • 김남희

오세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임.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 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만큼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

이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법률 제 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치원"이란"을 ""유아학교"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유치원과"를 "유아학교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를 "유아학교대표, 유아학교교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유치원교원"을 "유아학교교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4항 전단·후단·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부분 중 "유치원은"을 "유아학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국립유치원"을 "유이학교"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공립유치원"을 "공립유아학교"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를 "시립유아학교와 도립유아학교로"로 하며, 같은조 제3호 중 "사립유치원"을 "사립유아학교"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치원을"을 "유아학교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립유치원을"을 "사립유아학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립유치원을"을 "사립유아학교를"로, "유치원을"을 "유아학교를"로 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원을"을 "유아학교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전단 중 "유치원을"을 "유아학교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중 "유치원은"을 "유아학교는"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유치원을"을 "유아학교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유치원규칙)"을 "(유아학교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유치원을"을 각각 "유아학교를"로, "원장"을 "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원장"을 "교장"으로,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치원은"을 "유아학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유치원은"을 "유아학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유치원생활기록)"을 "(유아학교생활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유치원과의"를 "유아학교와의"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외국인유치원)"을 "(외국인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인유치원"이란"을 ""외국인유아학교"란"으로, "유치원을"을 "유아학교를"로, "외국인유치원"을 "외국인유아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유치원"을 "외국인유아학교"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장"을 "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장"을 "교장"으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원장"을 "교장"으로, "유치원생활기록"을 "유아학교생활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17조의3 중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립유치원은"을 "국립유아학교는"으로, "공립·사립유치원은"을 "공립·사립유아학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치원은"을 "유아학교는"으로 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중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유치원 운영의"를 "유아학교 운영의"로,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에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사립유아학교는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각각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각각 "유아학교"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중 "유치원"을 "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중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유치원규칙"을 "유아학교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7호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8

호 중 "원장"을 "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립유치원"을 "사립유아학교"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5의 제목 중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각각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국립유치원"을 "국립유아학교"로, "공립유치원"을 "공립유아학교"로, 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립유치원"을 "사립유아학교"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유치원규칙"을 "유아학교구정위원회"로, "유치원규칙"을 "유아학교규칙"으로 한다.

제19조의6의 제목 및 제1항 중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각각 "유아학교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7의 제목 중 "유치원회계"를 "유아학교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유아학교에 유아학교회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원회계"를 "유아학교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을 "유아학교회계는 유아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치원회계"를 "유아학교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치원회계는 "유아학교"로, "유치원회계"를 "유아학교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유치원회계"를 "유아학교회계"로, "유치원을"을 "유아학교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유치원회계"를 "유아학교회계"로, "국립유치원"을 "국립유아학교"로, "공립유치원"을 "공립유아학교"로 한다.

제19조의8의 제목 및 제1항 중 "유치원회계"를 각각 "유아학교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장"을 "교장"으로,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유아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유아학교운영위원회는 유아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유아학교운영위원회는 유아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원장"을 "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원장"을 "교장"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유치원회계"를 "유아학교회계"로, "국립유치원"을 "국립유아학교"로, "공립유치원"을 "공립유아학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원장·원감"을 "교장·교 감"으로, "유치원에는 원감"을 "유아학교에는 교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원장은 유치원"을 "교장은 유아학교"로, "유치원의"를 "유아학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원감은 원장"을 "교감은 교장"으로,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원장이"를 "교장이"로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원감"을 "교감"으로, "유치원은 원장"을 "유아학교는 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원장"을 "교장"으로 한

다.

제21조의3의 제목 중 "원장"을 "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장"을 "교장"으로. "유치원규칙"을 "유아학교규칙"으로 한다.

제21조의4제3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21조의5 중 "유치원과 원장"을 "유아학교와 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원장 및 원감"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유치원은"을 "유아학교는"으로, "사립유치원은"을 "사립유아학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1호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치원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는 유아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유치원은"을 "국립유아학교는"으로, "공·사립유치원은"을 "공·사립유이학교는"으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사립유치원"을 "사립유아학교"로, "유치원교사"를 "유아학교교사"로 한다.

제27조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중 "유치원이"를 "유아학교가"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국립유치원"을 "국립유하학교"로, "유치원이"를 "유아학교가"로, "원장"을 "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본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유치원과의"를 "유아학교와의"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휴원"을 "휴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장"을 "교장"으로, "휴원처분"을 "휴교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휴업된 유치원은"을 "휴업된 유아학교는"으로, "유치원에서"를 "유아학교에서"로,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을 "휴교된 유아학교는 휴교기간중"으로, "유치원의"를 "유아학교의"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유치원이"를 "유아학교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본문 및 단서 중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유치원을"을 "유아학교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치원이"를 "유아학교가"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유치원을"을 "유아학교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아학교로 본다.
- 제3조(유치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규칙은 이 법에 따른 유아학교규칙으로 본다.
- 제4조(교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유아학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 제5조(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의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유아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2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 제50조제2항 중 "휴원을"을 "휴교를"로 한다.
 - ②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4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외국인유치원"을 "외국인유아학교"로 한다.

⑤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51조의2 제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유치원을"을 "유아학교를"로 한다.

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⑦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교장·교감 등의"를 "교장·교감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교장·교감·원장·원감은"을 "교장·교감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9조 중 "교감, 원장 또는 원감"을 "교감"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교장·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교장 등의"를 "교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단서·제4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 중 "교장·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교장 또는 원장으로"를 "교장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장·원장"을 "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교장·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장·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교장·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교장·원장"을 "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교장·원장"을 "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장·원장"을 "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장·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29조의4제4항 중 "교장·원장"을 "교장"으로, "교감·원감"을 "교 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교장·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49조제4항제2호다목 중 "교장 ·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⑧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 및 제7호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유치원을"을 "유아학교를"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사립유치원을"을 "사립유아학교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8조제4항제3호 중 "유치원이나"를 "유아학교나"로 한다.

제9조제18호·제19호·제21호·제24호 및 제25호 중 "유치원"을 각 각 "유아학교"로 한다.

①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b)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외국인유치원"을 "외국인유아학교"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5항제2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또는 휴원"을 "또는 휴교"로 한다.

⑧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⑩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가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호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제68조제9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법률 제20580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 다.

②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②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유치원과"를 "유아학교와"로 한다.

②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9호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0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②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③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유치원만을"을 "유아학교만을"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29조제4항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마목 중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을 "유아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유치원과"를 "유아학교와"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사립유치원"을 "사립유아학교"로 한다.

제70조의5제1항 단서 중 "사립유치원"을 "사립유아학교"로 한다.

-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사립유치원"을 각 "사립유아학교"로 한다.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21호 본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③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③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호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 스포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③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나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⑩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제2호의3 중 "유치원의 원장"을 "유아학교의 교장"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8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유치원의 원장"을 각각 "유아학교의 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치원의 원장"을 "유아학교의 교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41조제3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50조제5항제2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5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3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④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⑱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유치원을"을 "유아학교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유치원을"을 "유아학교를"로 한다.

④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공립유치원과"를 "공립유아학교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유치원은"을 "유아학교는"으로 한다.

②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유치워"을 "유아학교"로 한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유치원을"을 "유아학교를"로 한다.

ᡚ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2호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유치원과정"을 "유아학교과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제4호 중 "휴원·휴교"를 "휴교"로 한다.

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를"로 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223조제2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228조제4항 단서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352조제2항 중 "유치원과"를 "유아학교와"로 한다.

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가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⑥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2호 중 "유치워"을 "유아학교"로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제1항·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⑥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가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⑯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⑥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⑱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유치원은"을 "유아학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한다.

⑩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국립유치원"을 "국립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호나목 중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을 "공립유아학교·사립유아학교"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휴교

① 법률 제20668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③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치워"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8조 중 "공립유치원"을 "공립유아학교"로 한다.

④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유치원"을 각각 "유아학교"로 한다.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⑩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⑦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 ⑧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 ②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원장 및 원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유치원"이란</u> 유아의 교육을	2. <u>"유아학교"란</u>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①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①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	
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유치원과</u> 어린이집간의 연계	2. 유아학교와
운영	
3.・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① (생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	②
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	
전문가, <u>유치원대표, 유치원교</u>	유아학교대표, 유아학교

<u>사</u>(수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 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 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 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 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교원·직원·유치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u>유치원</u>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亚/	<u>사</u>	-
	 (현행과 같음) <(유아교육진흥원) ①	-
 원-	유아학교교	- ! -
	 	-
	 (현행과 같음) <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_
<u>o}</u>	<u>유</u> <u>위</u> 학교	- - -
		-
② ④ ·	· ③ (현행과 같음) 유아희	- <u>-</u>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 은 관할 <u>유치원</u> 및 교육행정기 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 감은 관할 <u>유치원</u> 및 교육행정 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생략)
-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5항에 따라 연계를 요 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 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 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 1. 조사대상 <u>유치원</u> 및 교육행 정기관의 교원·직원
- 2. 조사대상 <u>유치원</u>의 유아 및 졸업생
- ⑦ ~ ⑨ (생 략)

제2장 <u>유치원</u>의 설립 등 제7조(<u>유치원</u>의 구분) <u>유치원은</u> 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u>국립유치원</u> : 국가가 설립·

<u>유아학교</u>
유아학교
⑤ (현행과 같음)
<u>⑥</u>
1
2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2장 <u>유아학교</u> 의 설립 등
세7조(<u>유아학교</u> 의 구분) <u>유아학교</u>
<u></u>
 1. 국립유아학교

경영하는 유치원

- 2. <u>공립유치원</u> : 지방자치단체 가 설립·경영하는 <u>유치원(설</u> 립주체에 따라 <u>시립유치원과</u>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 다)
- 3. <u>사립유치원</u> : 법인 또는 사 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u>유치원</u>
- 제8조(<u>유치원</u>의 설립 등) ① <u>유치</u> 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u>사립유치원을</u>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유치원</u>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u>유치원</u>설립·경영자인 경우

<u>유</u> 아학교	
2. <u>공립유아학교</u>	_
<u>유아학교</u>	_
시립유아 ^호	<u>카</u>
교와 도립유아학교로	_
3. <u>사립유아학교</u>	_
<u>유아학교</u>	_
제8조(<u>유아학교</u> 의 설립 등) ① <u>유</u>	<u>}</u>
<u>아학교를</u>	_
	_
② <u>사립유아학교를</u>	_
	_
③	_
	_
	_
<u>유</u> 아학교	_
1. • 2. (현행과 같음)	
3	_
	_
유아학교	_
	•

- 4. (생략)
-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유치원을</u> 설립·운영할 수 없 다.
 - 1. ~ 6. (생략)
 - 7. 제32조에 따라 <u>유치원</u>의 폐 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9. (생략)
- 제8조의3(교육명령) ① 교육부장 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 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제8조의2제5호 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u>유치</u> 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 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4. (현행과 같음)
④ <u>사립유아학교를</u>
<u>유아학교를</u>
제8조의2(결격사유)
-유아학교를
1. ~ 6. (현행과 같음)
7 <u>유아학교</u>
8. • 9. (현행과 같음)
제8조의3(교육명령) ①
를 <u>클</u>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 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② (생략)

- 제9조(<u>유치원</u>의 병설) <u>유치원은</u>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 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 1. ~ 5. (생 략)
 - 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병설된 <u>유치원</u>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치원규칙) ①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u>유치</u> 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u>유치원</u>규칙의 기재사항 및

- ② <u>유치원</u>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입학) ① <u>유치원</u>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어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 제12조(학년도 등) ① <u>유치원</u>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u>유치원은</u>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 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u>유치원</u>의 학기·수업일수· ③ <u>유아학교</u>

	교장
	,
	② 유아학교
าไ	,
제	11조(입학) ① <u>유아학교</u>
	 ② 교장
	<u> </u>
	유아학교
	③ (현행과 같음)
제	12조(학년도 등) ① <u>유아학교</u>
	 ② 유아학교는
	② <u>刊 </u>
	· ③ 유아하고

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교육과정 등) ① <u>유치원은</u>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 ③ (생 략)
 - ④ 교육부장관은 <u>유치원</u>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 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특수학교 등) ① 특수학교 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 아에게 <u>유치원</u>에 준하는 교육 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 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제13조(교육과정 등) ① <u>유아학교</u> 는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유아학교</u>
제15조(특수학교 등) ①
<u>유아학교</u>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u>유치</u>

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등을 마련하는 등 <u>유치원과의</u>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외국인 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 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 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 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 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 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 <u>원</u>

<u>.</u>
②
<u>유</u> 야}
학교
<u>유아학교와</u>
의
제16조 <u>(외국인유아학교)</u> ① <u>"외국</u>
<u>인유아학교"란</u>
<u>유</u> 아학교를
<u>외국인유아학교</u>
<u>.</u>
② 외국인유아학교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 교

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 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 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14조 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 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 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 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 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 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 할 수 있다.

- ② <u>원장</u>은 제1항에 따른 건강 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 에 대하여는 해당 유아의 보호 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u>원장</u>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u>유치원</u>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 식을 할 수 있다.
- ④ (생 략)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

<u>장</u>
<u>교장</u>
② 교장
③ 교장
유아학교
,
④ (현행과 같음)
네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유치원생활기록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치원에 대한 감독·검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2. ~ 5. (생략)

② 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7조의3(응급조치) <u>원장(제21조 제2항에 따라 원장</u>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한) ① <u>교장</u>
유아학교생활기록
•
1. 유아학교
2. ~ 5. (현행과 같음)
② 교장
(S) TITE SB
 (3) (청해과 간으)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응급조치) <u>교장</u>
③ (현행과 같음)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사고 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 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18조(지도·감독) ① <u>국립유치</u> 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을 받으며, <u>공립·사립유치원은</u>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②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 히 하기 위하여 <u>유치원</u> 교육과 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9조(평가)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u>유치원</u>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u>유치원</u> 및 교육행 정기관의 업무(회계관리를 포 함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제18조(지도·감독) ① <u>국립유아</u>
학교는
<u>공립·사립유아학</u>
교는
<u>.</u>
②
유아학교
제19조(평가) ①
<u>유아학교</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u>유아학교</u>

(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⑤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⑤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야 한다.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제193 설치 등) ① 유치원 운영의 자 설치 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 ---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 위원회는 해당 <u>유치원</u>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 다.

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

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

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유치원운영위원회</u>의 위 원이 될 수 없다.
- 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④ 유아학교운영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유아학교는</u>
 제19조의3(<u>유아학교운영위원회</u> 의 설치 등) ① <u>유아학교 운영의</u> -
사립유아학교는 유 <u>아학교운영위원회</u>
② 유아학교 은영위원회 유아학교
3
<u>유아학교운영위원회</u>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로 정한다.
- ⑥ 제9조에 따라 병설된 <u>유치</u>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u>유치</u>원은 영위원회를 해당 <u>유치원을</u>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u>유치원</u> 교원 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1항에 따른 <u>유치원운영위</u> 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9조의4(<u>유치원운영위원회</u>의 기능) ① 국립·공립 <u>유치원</u>에 두는 <u>유치원운영위원회</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u>유치원규칙</u>의 개정에 관한

5 유아학교	
<u>운영위원회</u>	
<u>유아학교</u>	
⑥ 학교	
<u> </u>	<u>유아</u>
<u>유아학교</u>	
제19조의4(<u>유아학교운영</u> 기능) ①	
<u>유</u> 아학교운영	위원회
1. <u>유아학교규칙</u>	

사항

- 2. <u>유치원</u>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u>유치원</u>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에 관한 사항
- 3의2. ~ 4. (생 략)
-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6. (생략)
- 7. <u>유치원</u>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u>원장</u>의 공 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 한 사항
- 9. 10. (생략)
- ② <u>사립유치원의</u>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 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u>유치원</u> <u>운영위원회</u>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제19조의5(<u>유치원운영위원회</u>의 제1 구성·운영) ① 제19조의3에 = 따른 <u>유치원운영위원회</u> 중 <u>국</u> - 립유치원에 두는 <u>유치원운영위</u> <u>역</u> 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u>역</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 <u>공립유치원</u>에 두는 <u>유치원운영</u> -

2. 유아학교
3. <u>유아학교</u>
3의2. ~ 4. (현행과 같음)
5. <u>유아학교</u>
6. (현행과 같음)
7. 유아학교
8
교장
9. • 10. (현행과 같음)
② 사립유아학교
유아학
교운영위원회
· 제19조의5(<u>유아학교운영위원회</u> 의
구성·운영) ①
유아학교운영위원회국
립유아학교유아학교운
영위원회
고린유아하고유아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 한다.

-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u>유치원</u> <u>운영위원회</u>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u>유치원규칙</u>으로 정한다.
-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u>유</u> <u>치원운영위원회</u>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 제19조의7(<u>유치원회계</u>의 설치) ① 국립·공립 <u>유치원에 유치원회</u> <u>계</u>를 설치한다.
 - ② 유치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 1. ~ 7. (생략)
 - ③ <u>유치원회계는 유치원</u>의 운영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u>교운영위원회</u>
-	
-	
-	
(② <u>사립유아학교유아</u>
7	학교운영위원회
_	
_	
-	<u>유아학교규</u>
-	<u>칙</u>
제.	19조의6(유아학교운영위원회
,	위원의 연수 등) ①
-	유아학교운영위원회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19조의7(<u>유아학교회계</u> 의 설치)
(① <u>유아학교에 유아</u>
-	학교회계
(② 유아학교회계
-	
]	1. ~ 7. (현행과 같음)
(③ 유아학교회계는 유아학교
-	
-	
_	

- ④ 유치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u>유치</u> 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u>유치</u> 원회계를 해당 <u>유치원을</u> 병설 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 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의8(<u>유치원회계</u>의 운영) ① <u>유치원회계</u>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u>유치</u>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u>유치원운</u>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4) <u>유아학교회계</u>
-	
-	
-	
-	
(5 <u></u>
-	<u>학교</u> <u>유</u>
-	<u>아학교회계유아학교를</u>
-	
-	
(⑥ <u>유아학교회계</u>
-	<u>국립유아학교</u>
-	
(아학교
-	
제]	[9조의8(<u>유아학교회계</u> 의 운영)
	 ① 유아학교회계
_	
_	
(② 교장유아
	♡ <u>~ ♡ </u>
_	
_	유아학
-	교운영위원회
-	, ① () 시원크() 사진() 원고 () ()
(③ 유아학교운영위원회는 유아

<u>회계세입세출예산안</u>을 회계연 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 야 한다.

-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 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 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 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 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 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 로 본다.
- 1. · 2. (생략)
-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 4. 5. (생략)
- ⑤ <u>원장</u>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u>유치원운영위</u>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u>유치원회계</u>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국립유치원</u>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u>공립유치원</u>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 저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
,
④ 교장
1. • 2. (현행과 같음)
3. 유아학교
4. • 5. (현행과 같음)
⑤ 교장
<u>유아학교운영</u>
<u>위원회</u> .
⑥ <u>유아학교회계</u>
국립유아학교
<u>공립유</u>
아학교

· ‖20조(교직원의 구분) ① <u>유아학</u>

에는 교원으로 <u>원장·원감</u>·수 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의 <u>유치원에는 원감</u>을 두지 아 니할 수 있다.

-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 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 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③ <u>유치원</u>에 두는 교원과 직원 (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 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u>원장은</u>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 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u>유치</u> 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 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 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다만, <u>원감</u>을 두 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u> </u>	<u> </u>
<u>유</u> 아학교	에는 교감
② 유아학교-	
③ 유아학교	
	임무) ① 교장은
유아학교	
	유아
학교의	
	· 장 <u>유</u>
아학교	
<u> </u>	
교장이	
<u> </u>	
	<u>교감</u>
	- <u>유아학교는 교</u>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	석교사를
포함형	한다)가 그	그 직무를	대행한
다.			

- ③ (생 략)
-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u>유치원</u>의 유아를 교육한다.
-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유치원</u>의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①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와 원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 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u>장</u>
③ (현행과 같음)④
<u>유아학교</u>
 ⑤
유아학교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①
<u>유아학교</u> 교장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u>교장</u> 등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 ① <u>교장</u>
<u>유</u> 아학교규칙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 ② (생 략)
-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u>유치</u> 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 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 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u>원장 및</u>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 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② · ③ (생 략)
- 제23조(강사 등) ① <u>유치원</u>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

• ② (현행과 같음)
③
<u>유아학</u>
<u>iil</u>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아학교와 교장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u>교장 및</u>
교감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강사 등) ① 유아학교

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
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u>유치원은</u>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
1항 및 제10조의4를, <u>사립유치</u>
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u>유치원</u>에 두
 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 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 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u>유치원</u> 원비 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2조제2항에 따른 <u>유치원</u>
 의 이용형태
 - 2. · 3. (생략)
 - ② (생략)
 -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u>유아학교는</u>
	<u>사립유</u>
	<u>아학교는</u>
	② <u></u> 命op 학교
	<u>.</u>
제	25조(<u>유아학교</u> 원비) ① <u>유아학</u>
	<u></u>
	유아학교
	
	아학교
	<u>.</u>
	· 1유아학
	<u>inl</u>
	<u>-</u>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유아학교는 유아학교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u>국립유치원은</u>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u>공·사립유치원은</u>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 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 가상승률을 초과하여 <u>유치원</u> 원비를 받을 수 있다.

1. • 2. (생략)

- ⑤ 그 밖에 <u>유치원</u>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 ② 저 (생 략)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4
<u>국립유아학교는</u>
<u>공·</u> 사립유아학
교는
<u></u>
학교
1. • 2. (현행과 같음)
⑤
Ⅱ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3

한다.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 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u>유치원</u>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 환을 명할 수 있다.

-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지 원금을 사용한 경우
- 2. · 3. (생략)
- 4.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 ② · ③ (생 략)

제28조의2(<u>유치원</u> 명칭의 사용금 지) 이 법에 따른 <u>유치원이</u> 아 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u>유아학교</u>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①
 1. 유아학교
 2.·3. (현행과 같음) 4. <u>유아학교</u>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 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u>유아학교국</u>
립유아학교
<u>유아학교</u>
<u></u>
<u>아학교가</u>
유아학교
유아학교
교장
TIT. Q
②
유아학교
유아학교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관할청은 제28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한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표한다.

② · ③ (생 략)

- 제31조(휴업 및 <u>휴원</u> 명령) ① 관 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 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원장</u> 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u>원장</u>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 야 한다.
 - ③ 관할청은 <u>원장</u>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
유아학교
<u> </u>
<u>.</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휴업 및 <u>휴교</u> 명령) ①
<u>교</u> 장
②
교장
③ <u>교장</u>

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 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u>휴</u> 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u>휴업</u>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u>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u>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있다.

- 1. <u>원장</u>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 나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 <u>원장</u>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u>幹</u> 亚
<u> 처분</u>
④ <u>휴업</u>
<u>된 유아학교는</u>
<u>유아학교에서</u>
<u>는 휴교기간중</u>
<u>유아학교의</u>
<u>.</u>
제32조(<u>유아학교</u> 의 폐쇄 등) ① -
<u>유</u> 아학교가
<u>.</u>
1. 교장
2. 교장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의2. <u>원장</u> 또는 설립·경영자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 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생략)

- ②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③ 관할청은 <u>유치원이</u> 「도로 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 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의2. <u>교장</u>
2의3 <u>교장</u>
<u>교</u> 광
· 3. (현행과 같음) ②
유아학교
<u>유아학교</u>
<u></u>
학교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수 있다.

제33조(청문) ① (생 략)

② 관할청은 제32조에 따라 <u>유</u> <u>치원</u> 또는 시설의 폐쇄나 운영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 야 한다

제34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2항에 따른 <u>유치원</u>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u>유</u> <u>치원을</u> 운영한 자
- 2. (생략)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u>유아학교</u>
제33조(청문) ① (현행과 같음)
② <u></u>
아학교
제3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i></i>
,
1
<u>유아학교를</u>
2. (현행과 같음)
3

법으	로 제8	조제2형	항 또	는 제4
항에	따른 _	유치원	의 설	립인가
• 폐	쇄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은	자			
4. (생	략)			

- ③ (생 략)
- 제35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u>유치원</u>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② · ③ (생 략)

<u>유아학교</u>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태료) ①
<u>유아학교</u>
② · ③ (현행과 같음)